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재나1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재심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종합

담당변호사 윤상일

피고(재심원고) A

변 론 종 결 2020. 4. 24.

판 결 선 고 2020. 5. 22.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가단212251 판결

제2심판결(

환송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2나807 판결 대법

원 판결(

환송)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4932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60155 판결

주 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5,766,302원과 그 중 7,608,317원에 대하여 2007. 1. 1.부터, 11,848,200원에 대하여 2008. 1. 1.부터, 12,873,525원에 대하여 2009. 1. 1.부터, 12,208,518원에 대하여 2010. 1. 1.부터, 1,227,742원에 대하여 2010. 2.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 및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국가 소유의 서울 관악구 B 대 373.8㎡ 중 일부를 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12251호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807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원고가 부당이득금 중 원금 청구를 감축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는 확장한 상태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져 일부 기간(2005. 2. 8.~ 2005. 4. 12.)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위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쌍방이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44932호로 재판이 진행된 결과 2006. 4. 11. 이전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 중 2005. 4. 13. 이후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각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0155호로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되어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5다44229호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는 재심대상 판결에서 문제가 된 토지에는 전산등기부가 이미 구비되어 있고 피고는 2000. 12. 9.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한 적도 있으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비단8호 결정문을 받았기에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재심대상 재판에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 재판에서 이를 고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1)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동일 당사자 사이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 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피고가 제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비단8호 결정문은 피고 등 4인이 서울지방법원 관악등기소 등기관에 대한 처분에 이의신청을 한 비송사건에 관한 결정문으로서 확정판결도 아닐 뿐 아니라 재심대상 판결과 당사자도 같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재심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김병룡, 판사 이순형

1)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훑하여 볼 여지도 있으나, 재심소송의 소송물은 각 재심사유에 따라 별개이고 재심사유마다 독립한 청구원인이 되는바, 피고가 수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만 판단한다.